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 등록·출원 전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공지사실 증명을 통하여
디자인침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http://drights.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

추진배경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개선필요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블로그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으나
디자인등록 출원 또는
제품화되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
이와 유사한 디자인들이 난립

2

창작자의 권리침해 대응

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및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표절에 노출

3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법적영역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독립디자이너 등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32, 2234 / drights@kidp.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공지증명



공지증명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모방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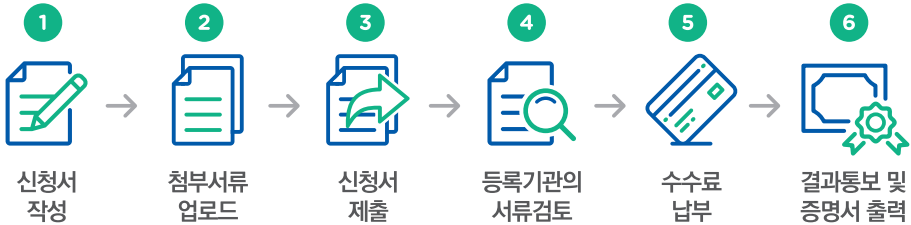
디자인 등록출원 전 디자인 창작사실(창작자·시기) 증명제도로 디자인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디자인모방(Dead Copy)의 출원등록 방지

2. 특허청 디자인권 심사 자료



공지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시 창작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의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신청절차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 비교

구분	디자인등록	디자인공지증명
목적	· 독점 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 공지사실 증명
처리기간	· 출원 후 6개월 내외	· 짧음(1~3일)
권리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신청절차	·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등록 출원서 제출 ·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 - 실체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 간단
비용	· 출원비용 : 94,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 75,000원 · 연차등록료 :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 20,000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 (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보호기간	· 존속기간 20년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